

##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

### 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. 10. 신철성의원 외 2인  
나. 회부일자 : 2011. 1. 12.  
다. 상정일자 : 2011. 1. 18.(제1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)

### 2. 제안설명(제안설명자 : 신철성 의원)

#### ○ 제안이유

2011. 1. 1일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한 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## ○ 주요골자

- 제1조(목적) 중 “시장을 대리하여 제천시의회”를 “제천시의회”로 하고,
- 제2조 제2호 중 “본부장·실장”을 “국장”으로, “과장, 담당관”을 “담당관, 과장”으로 한다.
- 제2조 제5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5.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동학)

-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관계공무원의 직위를 동일하게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읍·면·동장을 포함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

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4. 질의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#### 5. 소수 의견

“ 없 음 ”

#### 6. 토론 요지

“ 없 음 ”

#### 7. 심사 내용

“ 원안 가결 ”

#### 8. 심사 결과

“ 원안 가결 ”

#### 9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